

바닷가정보의 등록 방법(제16조 관련)

구분		등록 방법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등록대상		면적 33㎡ 이상, 가장 넓은 부분의 폭이 1m 이상인 바닷가를 등록대상으로 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위치	가. 좌표	바닷가 양 끝단과 중심점의 좌표로 표시하고, 좌표정보는 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로 표시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나. 인접 토지의 지번	바닷가에 접한 토지 중 바닷가 양 끝단이 접한 토지의 지번으로 표시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. 경계		가. 바닷가의 육지쪽 경계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바다쪽 경계에 따른다. 나. 바닷가의 바다쪽 경계는 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 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. 면적		면적의 단위는 ㎡로 하며, 1㎡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.5㎡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.5㎡ 이상일 때에는 올림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. 관리번호		가. 바닷가가 접한 토지의 관할 시·군·구의 행정기관코드(5자리), 육지와 도서를 구분하는 구분 코드(1자리), 바닷가 연번(4자리), 바닷가가 확대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보조 연번(4자리)을 조합하여 총 14자리로 구성한다. <table border="1"><tr><td>0</td><td>0</td><td>0</td><td>0</td><td>0</td><td>0</td><td>0</td><td>0</td><td>0</td><td>0</td><td>0</td><td>0</td><td>0</td><td>0</td></tr><tr><td colspan="5">행정기관코드</td><td>도서 육지 구분</td><td colspan="4">바닷가 연번</td><td colspan="4">보조 연번</td></tr></table> 나. 바닷가가 다수의 시·군·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부분이 접하는 시·군·구의 행정기관코드를 사용한다. 다. 바닷가 연번 및 보조 연번은 서쪽에서 동쪽, 북쪽에서 남쪽방향으로 해안선을 따라 부여한다.	0	0	0	0	0	0	0	0	0	0	0	0	0	0	행정기관코드					도서 육지 구분	바닷가 연번				보조 연번			
0	0	0	0	0	0	0	0	0	0	0	0	0	0																	
행정기관코드					도서 육지 구분	바닷가 연번				보조 연번																				